

언론보도로 인한 루머의 확대 재생산과 인격권

김형일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매년 대형 콘서트를 열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았던 가수 나훈아 씨가 2007년 2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취소하고 잠적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은퇴설, 중병설, 해외도피설, 국내 여배우와의 염문설 등의 구체적인 소문들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었다. 12월 들어 일부 언론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관련 소문을 기사화했고 이 기사는 다시 네트워크를 타고 블로그와 게시판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한국일보, 2008. 1. 27.).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고 급기야 일본 폭력조직 개입설까지 나도는 등 삼류소설을 방불케 하는 엽기적 괴담으로 비화되었다. 마침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부산지역 병원과 호텔을 중심으로 내사에 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 근거 없는 루머인 것으로 드러났고, 급기야 2008년 1월 25일, 당사자인 나훈아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제기된 온갖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함으로써 사건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예인과 관련한 루머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모델 출신의 한 연기자는 뜬금없이 사망했다는 설이 돌기도 했고, 아들에 대한 루머 때문에 수년간 친자확인소송을 벌여 배상을 받아낸 여성 아나운서도 있었다.

연예인과 관련한 루머가 확산되는 과정은 항상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 활동이 뜸하다 싶으면 몇 가지 사소한 의혹들이 결합되어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형성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몇 차례의 운색 과정을 거치면 '아니 뎀 굴뚝에 연기나라'는 속담처럼 점점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당사자들은 루머가 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해명이나 반박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렇다고 침묵하면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루머는 기정사실인 양 퍼져나가고 그의 인격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만다. 그러나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오명이나 악평이라도 있는 것이 연예인의 서글픈 숙명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적극적인 해명이나 반박을 통해 소문이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침해된 권리가 원상복구 되는 것은 아니다.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문을 받아낸다고 해도 실추된 이미지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고, 물

질적 손해배상은 간접적 보상일 뿐이다.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연예인이기에 무책임한 루머보도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들의 경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수백 명의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룬 기자회견장에서 나훈아 씨는 언론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러분이 펜으로 나를 죽이는 거다”라며 자신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언론매체를 인격살인자로 규정했다.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쓴 언론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쓴 것뿐이야. 방조자다”라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매체에 대해서조차 “나는 한 줄도 안 썼어. 방관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써 내려갈 때는 대한민국 언론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 신중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의 주장에 다소 비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네트워크 사회가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옥죄는 거대한 ‘괴물’로 변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며 연예인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언론보도와 인격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는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인격권이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

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이재진, 2006). 현행법에서 인격권이 명시된 사례는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부여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인격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중요한 권리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언론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침해되는 인격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언론자유와 상충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두 권리가 충돌할 때는 양자의 이익을衡量하여 절충하기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형법 제309조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 사실은 물론 사실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함으로써 보도내용이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 1996. 8. 23. 선고 94도3191판결). 따라서 나훈아 씨 관련보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든가 아니면 최소한 기사가 그렇다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다면 인격권의 침

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언론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① 특정인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는지의 여부 ② 정보 접근의 난이도 ③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④ 취재원의 신뢰도 ⑤ 보도의 긴급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처벌의 수준이나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진, 2006). 다음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 1998. 10. 9. 선고 97도158판결).

그러나 나훈아 씨의 행적과 관련한 최근의 추측성 보도들은 인터넷과 증권을 떠도는 소문들을 모아서 보도한 것일 뿐 사실 여부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도 없고 언론이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물론 당사자가 언론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해야 할만큼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 나훈아 씨의 행적에 대한 추적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대중들은 물론 나

훈아 씨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언론은 이들 유명 연예인들은 공인(public figure)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연예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끌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접근하고자 하며, 때로는 선정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유명세를 타게 되며 나아가서는 언론에 접근하여 반박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진, 2006). 이는 미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과 유사한데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공인은 공개적으로 대중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고자 하며, 언론에 접근할 가능성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구분된다고 본다(Gertz v. Welch, 418 U. S. 323(1974)).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서 공인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아직 공인에 대해 기능적인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가 공인인지 아닌지 여부보다는 명예훼손적 언사가 진실인지 아닌지의 진실성 여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공익성 여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재진, 1999).

사실 언론에서 종종 공인이라 부르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유명인(celebrity)이라고 해야 한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①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②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이희승 감수, 민중서림 엡센스 국어사전). 공인들에게는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도덕심이 평가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신순철, 2006). 연예인들은 개념적으로 공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에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취재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유명인과 공인

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취재를 용이하게 한다. 연예인을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어도 위법성 조각사유나 상당성의 원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예인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불리 법적 대응을 했다가 더욱 악의적인 보도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록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해당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한편으로 연예인들은 언론을 통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언론과 공조하는 면도 있다.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소위 '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생활을 조작하기도 하고 온갖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상업적으로 신비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일정부분 상호협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필요에 따라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하면서 온갖 인격침해를 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연예인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네트워크 사회와 루머의 확산

뜬소문, 유언(流言), 풍문(風聞) 등으로 해석되는 루머(rumor)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체제에서 혹은 정치적 불안, 전쟁 등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루머가 일말의 진실을 담는 경우도 있다. 여론에 수렴되지 못한 민중의 욕구와 원망을 담고 있는 잠재적 여론인 것이다. 그러나 루머는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고 지극히 안정적인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권태감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 단순한 흥밋거리로 '나는 믿지 않지

만 그렇다고 하더라' 하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때 루머는 비공식적이며 근거가 없고 전달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되기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병리현상일 뿐이다. 연예인과 관련한 루머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속한다.

어떤 경우이든 루머는 사안의 중요성과 모호함이 클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소문은 더욱 증폭된다. 나훈아 씨 관련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도 '국민가수'라고 불릴 만큼 명성이 있는 그의 행적이 장기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대형 콘서트를 열었던 당사자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콘서트를 취소했고 기획사 사무실도 폐쇄되었다. 루머가 발생할만한 조건이 잘 갖춰져 있던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루머의 확산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사회적 여건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빠르게 네트워크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은 시민참여의 확대로 개인의 표현의 기회를 증대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김진웅, 2007). 이런 시대적 환경 변화에서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신장된 반면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될 만큼 선진화된 정보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인터넷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네티즌이 비정상적 호기심, 악의적 발상 등으로 루머를 날조, 유포할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재미삼아 가볍게 주고받던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

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될 경우 기정사실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나훈아 씨 루머와 관련한 최초 보도는 2007년 2월 20일 <스포츠조선>에 실린 “나훈아, 활동 중단 잠적 ‘쌓이는 의문’... ‘은퇴설-이혼설’” 기사였다. 11월 22일에도 “나훈아 잠적 9개월째...중병? 하와이 거주? 꼬리무는 설” 기사를 냈다고 한다. 또 12월 27일자에서는 “<연예가 25시> 중견가수 R씨, 일 조폭 두목 애인 건드려 못매”에서 신체훼손설까지 이니셜로 기사화했다. 계열 월간지인 <여성조선>은 2007년 5월호에서 이니셜을 통해 후배의 아내를 뺏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일련의 보도의 진원지는 <스포츠조선> 소속 연예담당기자의 개인 블로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MBC PD수첩, 2008. 1. 29.). 이 블로그에는 이미 나훈아 씨와 관련된 갖가지 소문들이 한 편의 소설처럼 연재되어 있었다.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처럼 퍼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루머보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피해자는 뚜렷한데 가해자의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나훈아 씨의 적극적 대처로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었지만 루머의 확산에 기여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네티즌들은 언론의 성급한 보도를 비판하고 심지어 ‘나훈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루머의 확산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에는 지금도 또 다른 검증되지 않은 온갖 정보와 뉴스가 올라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루머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한 언론사나 기자들도 아무런 해명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과 같은 루머보도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누가 그 희생제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4. 루머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

루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때마다 각 언론매체에서는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각 언론매체는 사실과 칼럼, 기획 기사를 통해 각종 분석과 해설을 내놓았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법적인 규제조치들을 내놓고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온갖 방안들이 모색된다.

그러나 루머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사실 언론매체이다. 인터넷을 떠돌던, 말 그대로 뜬 소문에 불과했던 루머가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이다. 술자리의 안주거리로나 제격인 연예인에 대한 각종 뒷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활자화됨으로써 일말의 신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선정주의(sensationalism)란 언론이 다루어야 할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을 조명하기보다는 독자나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정주의는 전율과 긴장감을 제공하고 불건전하면서 유해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공포, 범죄, 재난, 성추문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인간의 탐욕에 호소하려는 속성을 지닌다(Tannenbaum & Lynch, 1960). 이런 속성은 소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색언론이란 19세기 말 경쟁적이고 침투력이 강한 상업적인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 대중의 원시적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하는 저널리즘을 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논리가 심화됨

에 따라 신문이 스스로 상품화됨으로써 대중에 영합하여 취재하는 행위로서, 미디어의 내용을 선정적인 사건으로 채우고 이를 과도한 비중으로 다루는 현상을 일컫는다(성동규, 2002).

언론의 선정보도는 기자의 특종심리와 언론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이 원인이다. 언론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한다는 점은 곧바로 시장점유율 상승과 광고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특종심리와 언론사 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오보나 허위보도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안동근, 1998).

둘째, 편의주의적 취재관행을 고쳐야 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일선 기자들의 취재는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는 익명의 네티즌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다.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보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지하철 결혼식’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몇몇 연극전공 대학생들이 지하철 안에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결혼식을 연출했고, 그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의 저녁종합뉴스에 이 장면이 방송되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내용과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동영상이 취재내용의 전부였을 뿐 충분한 사실 확인은 생략되었다. 다음날 어느 방송사에서 후속 취재를 시도했고 그 결과 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취재 과정을 단축시키고 번거로운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전형적인 취재편의주의로 인한 오보였다.

세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의 판단을 도와야 할 언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손쉽게

취재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기사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언론의 기본원칙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성동규, 2007).

언론에 부여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역할은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걸러야 한다. 인터넷과 블로그를 비롯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루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언론이 상업적 동기와 취재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루머를 확산시키는 경로로 전락하지 말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 사실 확인을 수행함으로써 루머의 사회적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에만 충실해도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옥조(2001). 〈미디어윤리〉. 중앙M&B
- 김진웅(2007). “언론의 자유와 인권”. 언론인권센터 토론회
- 성동규(2002). “스포츠팩의 연예인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봄호
- 성동규(2007). “네티즌 댓글의 무분별한 인용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봄호
- 송경재(2005). “연예인 X파일 사건, 언론 그리고 인터넷”.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세미나
- 송경재(2008). “네트워크사회의 인권침해와 언론”. 언론인권센터 토론회
- 신순철(2006). “언론의 무분별한 속보성 경쟁과 연예인의 인격권”. 〈언론중재〉. 봄호
- 안동근(1998). “언론분석: 황색 저널리즘의 회귀”. 〈저널리즘비평〉. 25권
- 이재진(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3-4호
- 이재진(2006). 〈언론보도와 인격권〉. 한나래